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돌봄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추가하고,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안의 심사 절차 등을 정하며,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에 관한 시정권고·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추가(안 제13조의4제8호)

나.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안의 심사 절차 등을 규정(안 제14조의7)

다. 표준약정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8)

라.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에 관한 시정권고·시정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안
제27조제3항)

마. 사회적 파급효과 또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위임하지 않음(안 제27조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7(표준약정서 제정·개정안 심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약정서

2.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한 표준계약서 목록

제14조의8(자문위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

라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제12호·제13호 및 제2항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급효과 또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 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의 용도)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u>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u>
<u><신 설></u>	<u>제14조의7(표준약정서 제정·개 정안 심사 등) ① 중소기업 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 터 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인에 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u> <u>② 중소기업부장관은 표준 약정서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 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해 야 한다.</u> <u>③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u>

<신 설>

-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 략)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약정서
 2.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한 표준계약서 목록
 제14조의8(자문위원) ① 중소기업
 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4
 항에 따라 수탁·위탁거래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
 원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요
 청에 따라 표준약정서의 제정·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문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고시로 정한다.

-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신설>

-----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제12호·제13호 및 제2항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급효과 또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924